

2022년 중소기업 범위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

1.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기준)

-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대분류,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전에는 별도로 규모기준을 정했던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서도 일반 영리기업과 똑같이 규모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업종별 규모기준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에 따라 아래 [별표1]의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 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12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 업종)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 제외)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교육 서비스업		P	

- 상기 별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해당 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로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선풍기 제조기업의 주업종을 판단해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http://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선풍기'로 검색하면, 분류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분류기호 28519)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이 중 앞의 두 자리(28)가 중분류 코드로, 제조업 대분류 기호인 'C'를 앞에 붙여 분류기호 "C28"(전기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이 됩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관련)
- 주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 매출액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매출액등의 산출방법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상한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자산총액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 중소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요건을 갖춘 업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2.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매출액 없는 경우에 주된 업종의 판단은 불가합니다.

사례3.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CD 제조, OLED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주 업종은?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 기준으로(제조업은 중분류) 판단하므로, 주업종 판단 시 동일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포함되는 세부업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제조(26310)와 OLED 제조(26212)의 매출액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으로 구분됩니다.(동일한 중분류)

아래의 표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분	각 업종별 매출액	표준산업 분류	주업종 판단의 매출액
컴퓨터 제조	150억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270억원
소프트웨어 CD 제조	120억원		
OLED 제조	200억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00억원
도매업	180억원	도매 및 소매업(G)	180억원

이 경우 세부업종별 매출액은 OLED 제조가 가장 크지만, 주업종 판단을 위해 대분류/ 중분류로

분류할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은 컴퓨터 제조와 소프트웨어 CD 제조가 속한 'C26'입니다.

사례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느 업종에 속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매출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출발생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① 가맹약정에 따라 본사에서 가맹점에 인테리어, 장비, 의자, 탁자 등을 납품하는 가맹매출, ② 가맹점에 원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가맹상품매출, ③ 본사 직영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영상품매출, ④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일정금액의 로열티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맹매출과 가맹상품매출은 도매업(상품 종합 도매업, 46800)으로 분류되며, 직영상품매출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커피숍이나 제과점의 경우 음식점업으로, 세탁소의 경우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로열티매출은 브랜드 사용권을 임대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76400)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별로 어떤 유형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지에 따라 주업종이 달라집니다.

사례5. 2016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20년 4월 이후에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20년 12월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2018년 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매출액입니다.

사례6.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은 900억 원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음료제조업 분야에서 500억 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 원일 때 중소기업 여부는?

주업종을 판단할 때는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하지만,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는 전체 매출액과 업종별 기준을 비교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판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주업종 판단 : 500억 원(음료제조업)과 400억 원(도매업)d,f 비교해,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업종
- ② 매출액 기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A기업의 중소기업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③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 A기업의 총 매출액(3년 평균) 900억 원과 업종별 기준인 800억 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음료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음료제조업(분류기호 'C11')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7. 주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450억 원, B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기업에 있어서 주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기업의 주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8.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20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1년 5월 15일에 평균 매출액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산정일이 속한 전 달(2021년 4월)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20년 5월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가목 적용사례

사례9. 도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이 각각 800억 원, 1,000억 원, 1,100억 원인 경우 중소기업인가요?

도매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상한기준(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도 충족하므로 A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사례10. 2019년 5월에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19년도 400억 원, 2020년 850억 원인 경우 2021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

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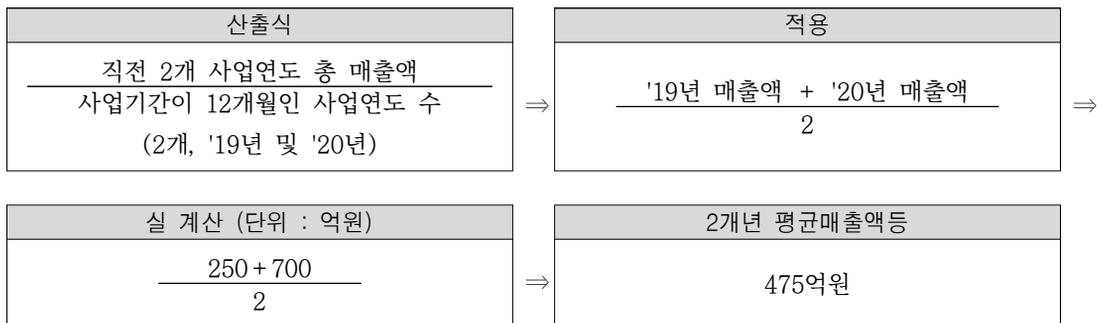
해당 업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20년도이며, A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850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속한 '정보통신업(J)'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입니다.)

사례11. 2018년 3월에 창업한 숙박 및 음식점업(I)업체(12월 결산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2018년도 250억 원, 2019년 250억 원, 2020년도 700억 원인 경우 2021년도 적용시점에서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해당 업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19년도, 2020년도 2개 사업연도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475억 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숙박 및 음식점업(I)의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입니다.)

아래는 산출식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12.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 원을 넘는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나요?

종전에는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 적용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규모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등 다른 조건들을 고려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2.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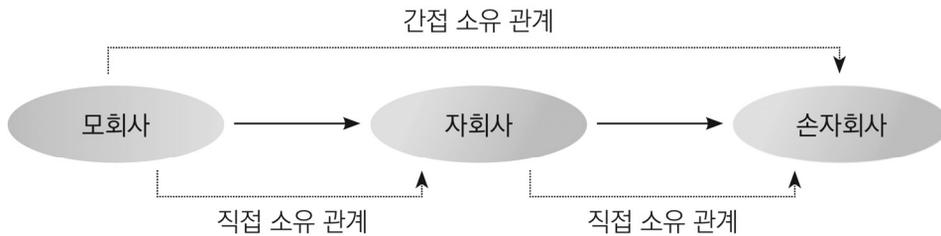
-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듯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독립성 기준은 이와 같은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합리적 지원을 위해 1995년 도입되었으며, 특히 관계기업 제도는 2009년에 법령에 반영되어 일정기간의 시행유예를 거친 뒤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현행 독립성 기준은 아래의 3가지가 있으며 여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은 주식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기업만 적용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성 기준 중 ③의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시장 지배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삼성, SK 등 64개이며, 총 계열회사 수는 2,301개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이에 버금가는 매우 큰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은 여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이러한 형태의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 규정은 직접적인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소유는 아래의 그림에서 모회사-자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며, 간접 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하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 60%가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60%

사례 2.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비율과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주식비율을 곱한 값이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40\% \times 60\% = 24\%$

사례 3.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한 비율이 간접소유비율이 됨

⇒ 간접소유비율 : $(20\% \times 60\%) + (55\% \times 40\%) = 52\%$

사례 4.



간접소유는 각 단계별로 최대출자자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관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며, 상위 단계부터 차례대로 계산 ⇒ 간접소유비율 : $(40\% \times 60\%) \times 80\% = 19.2\%$

- 동 규정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모법인'이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제의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사모집합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기업, 회생절차개시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35%, B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중소기업인가요?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대출자자가 아니므로 B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B기업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대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3.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A기업이 중소기업인가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A기업이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입니다.

사례4.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 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며,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5.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PEF)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흔히 말하는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舊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업의 경우,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이하 "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함)에 해당하므로, 펀드에서 출자한 기업은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

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창업투자회사 등 이외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형 펀드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간접소유 규정에 따라 피출자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의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기업 제도를 2009년 3월 25일에 법령에 반영하고, 1년 9개월 가량의 시행 유예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 간에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아니면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한, 관계기업에 속하더라도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업 간에 주식 등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판단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

재 기준의 주식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 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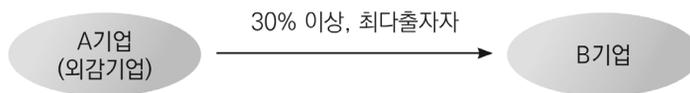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폐업일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최대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기업 존재 가능합니다.

유형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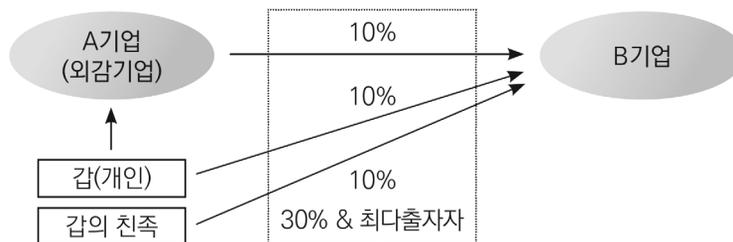
사례 1)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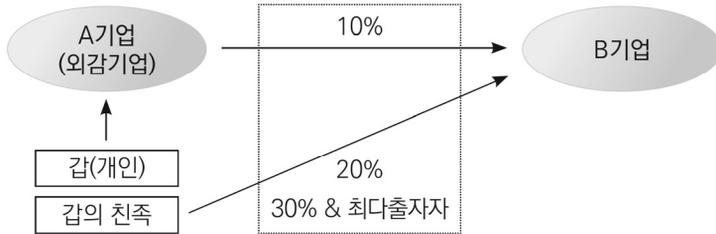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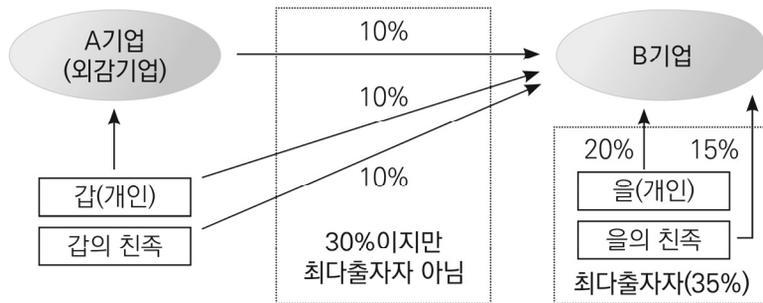
사례 3)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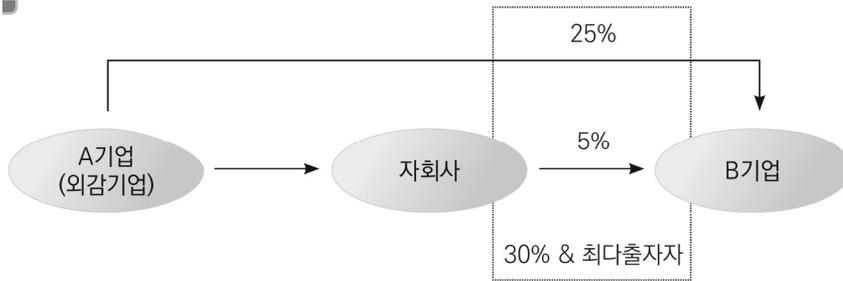
사례 4)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관련이 없는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최대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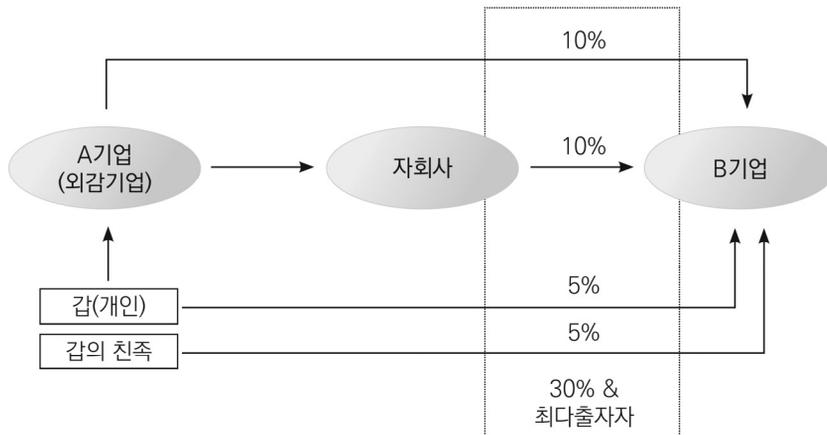
유형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사례 1)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유형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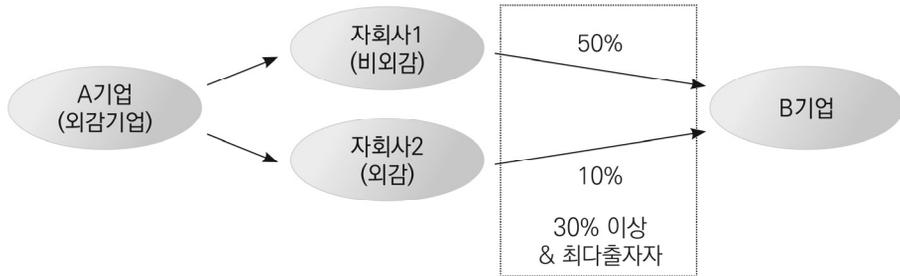
사례 2)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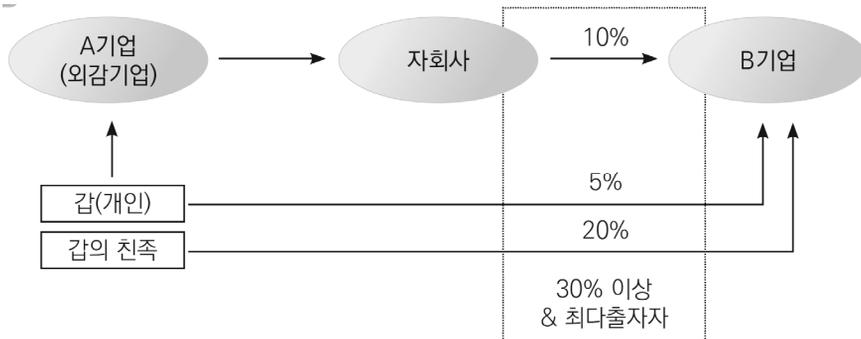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들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1,2 및 B기업), B기업의 지배기업(A기업)

* '자회사1'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지만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자회사 1과 B기업 간에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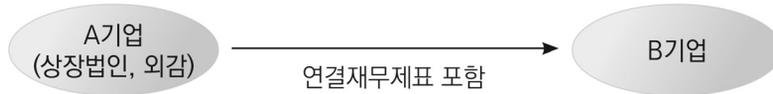
유형 4.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A기업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유형 5.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성립 사례)



기업 간 주식등의 관계가 앞의 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인 A기업이 B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 위의 5가지 유형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배·종속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정후기업
 -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②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

○ 앞에서 설명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 간에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등 합산 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며, 이 때 주식등을 소유하는 방식과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기준>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 비율만큼 매출액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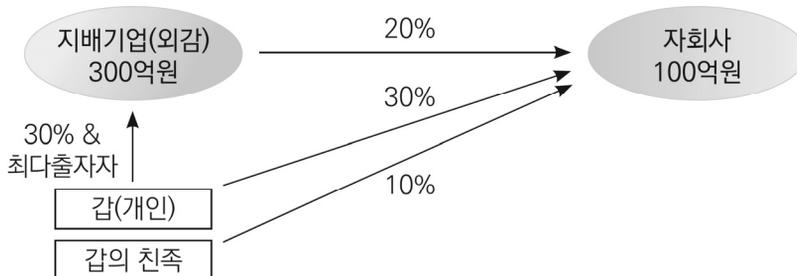
- 또한,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 간의 소유비율 만으로 산정합니다.
- 그럼 사례를 통해 지배유형별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평균매출액 등은 지배·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의미합니다. (괄호 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관련된 조항입니다.)

유형 1.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제3호)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100억원) = 400억원
- 자회사 : 자회사(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 = 400억원

유형 2.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제2호)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억원) + 자회사(100억원×20%) = 320억원
- 자회사 : 자회사(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20%) = 160억원

유형 3.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제2호~제5호)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억원) + 자회사(200억원) + 손자기업(100억원×40%) = 540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100%×40% = 40%
-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 + 손자기업(100억원×40%) = 54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지배기업(300억원×40%) = 300억원
※ 자회사가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자회사 손자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

유형 4.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제2호~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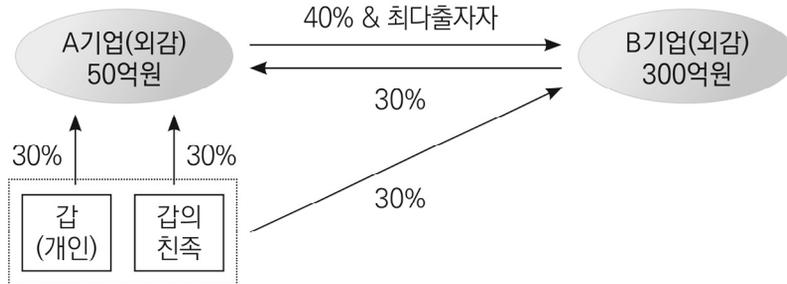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손자기업(100억원×24%) = 404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간접 소유비율 : 40%×60% = 24%
-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모회사(300억원×40%) = 32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24%) = 172억원
* 자회사가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님에 따라 손자기업 매출액 산정시 자회사는 제외

유형 5.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제2호~제5호)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억원) + 자회사(200억원×40%) + 손자기업(100억원×46%) = 426억원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간 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 16%(=40%×40%) = 46%
- 자회사 : 자회사(2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40%) = 320억원
- 손자기업 : 손자기업(100억원) + 지배기업(300억원×46%) = 238억원
* 자회사가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님에 따라 손자기업 매출액 산정시 자회사는 제외

유형 6. 기업 상호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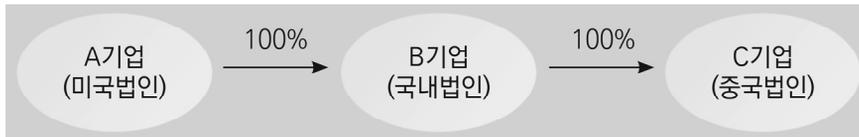


- A기업 : A기업(50억원) + B기업(300억원×40%) = 170억원
- B기업 : B기업(300억원) + A기업(50억원×40%) = 320억원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로 궁금증 해소하기

사례1.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18.11.1 시행)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사례2.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



지배·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A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여부는 판단하셔야 합니다. A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면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사례3.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

지배·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은 타 법인과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4.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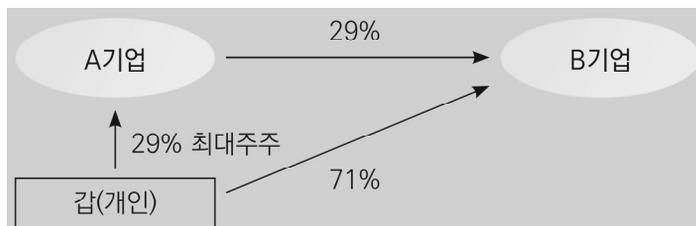
2012년 이전까지는 개인도 지배기업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후부터는 개인이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사례5. A기업(지배기업)과 B기업(종속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업종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 관계로 결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다만,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므로, 두 기업은 2021년 5월 15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사례6. 3년 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A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실질적 소유(50% 이상 소유)로서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을 100% 합산하므로, B기업은 당연히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7.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개인(갑)은 A기업의 최대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대출자자가 아니

므로 A, B기업 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8. 다음과 같이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하나요?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최대 상·하 2단계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A(500\text{억원}) + B(200\text{억원}) + C(300\text{억원} \times 50\%) = 850\text{억원}$
- B기업 : $B(200\text{억원}) + A(500\text{억원}) + C(300\text{억원}) + D(50\text{억원} \times 50\%) = 1,025\text{억원}$
- C기업 : $C(300\text{억원}) + A(500\text{억원} \times 50\%) + B(200\text{억원}) + D(50\text{억원}) = 800\text{억원}$
- D기업 : $D(50\text{억원}) + B(200\text{억원} \times 50\%) + C(300\text{억원}) = 450\text{억원}$

사례9. A기업(6월결산)이 B기업('20.2.1일 창업, 12월결산)의 주식을 2020년 3월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21년 4월 1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 등의 합산기준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17.7.1~2020.6.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20.4.1~'21.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사례10.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3년 1월 10일 물적분할 하여 신설법인 B기업과 관계기업이 되었으나, 이 후 2015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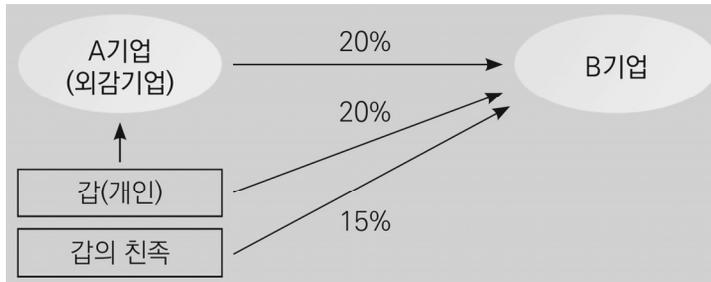
2015년 이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3년 초에 분할했다라도 다음 해인 201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반면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창업·합병·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해당 창업일·합병일·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15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11.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인가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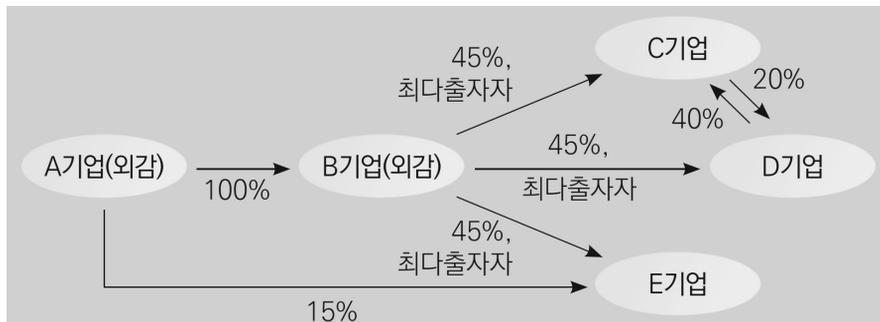
사례12.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 갑 : 갑의 친족과 합하여 A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① A기업, 갑, 갑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면 55%로서,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배·종속의 관계 성립
- ②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므로(자산총액 120억원 초과) 관계기업 성립
- ③ 관계기업에 따른 평균매출액의 합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 : A기업(700억원)+B기업(600억원×20%)=820억원
 - B기업 : B기업(600억원)+A기업(700억원×20%)=740억원
- ④ 운수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로, A기업은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B기업은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입니다.

사례13.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 기업별 평균매출액(억원) 〉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회사	E기업
평균매출액	1,000	200	29	11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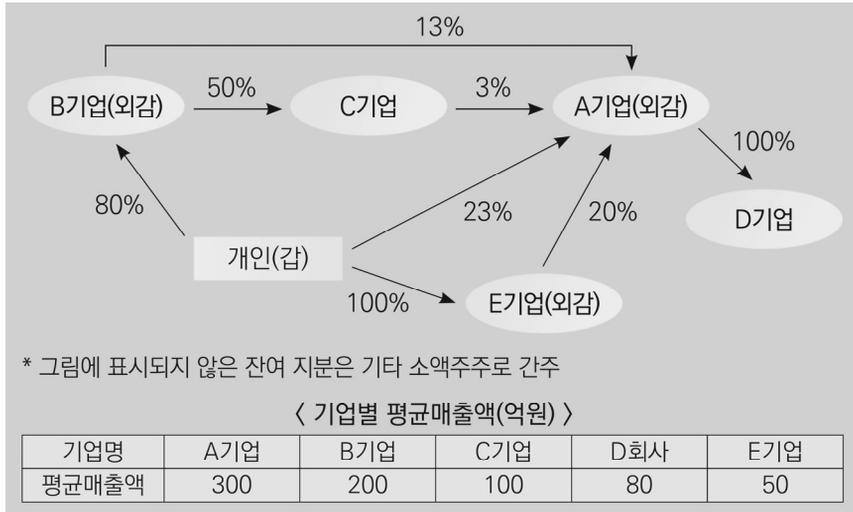
기업 간의 지배·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	B(유형1), C(유형3), D(유형3), E(유형2)
B기업	A(유형1)	C(유형1,2), D(유형1), E(유형1)
C기업	A(유형3), B(유형1,2)	-
D기업	A(유형3), B(유형1)	-
E기업	A(유형2), B(유형1)	-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 D기업의 경우처럼 상호간에 주식을 소유한 때는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A기업 = 1,000(A) + 200(B)×100% + 29(C)×(100%×45%) + 110(D)×(100%×45%) + 58(E)×(15%+100%×45%) = 1,297.35억원
- B기업 = 200(B) + 1,000(A)×100% + 29(C)×(45%+45%×40%) + 110(D)×(45%+45%×40%) + 58(E)×45% = 1,313.67억원
- C기업 = 29(C) + 1,000(A)×(100%×45%) + 200(B)×(45%+45%×40%) = 605억원
- D기업 = 110(D) + 1,000(A)×(100%×45%) + 200(B)×(45%+45%×40%) = 686억원
- E기업 = 58(E) + 1,000(A)×(15%+100%×45%) + 200(B)×45% = 748억원

사례14. 아래와 같은 지분관계를 갖는 기업군이 있을 경우, 기업별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 합산 결과는?



먼저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A기업	B(유형2), E(유형1)	D(유형1)
B기업	-	A(유형2), C(유형1)
C기업	B(유형1)	-
D기업	A(유형1), E(유형3)	-
E기업	-	A(유형1), D(유형3)

각 기업의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 = 300(A) + 200(B) × (13%+3%) + 50(E) × 20% + 80(D) × 100% = 422억원
- B기업 = 200(B) + 300(A) × (13%+3%) + 100(C) × 100% = 348억원
- C기업 = 100(C) + 200(B) × 100% = 300억원
- D기업 = 80(D) + 300(A) × 100% + 50(E) × 20% = 390억원
- E기업 = 50(E) + 300(A) × 20% + 80(D) × 20% = 126억원

